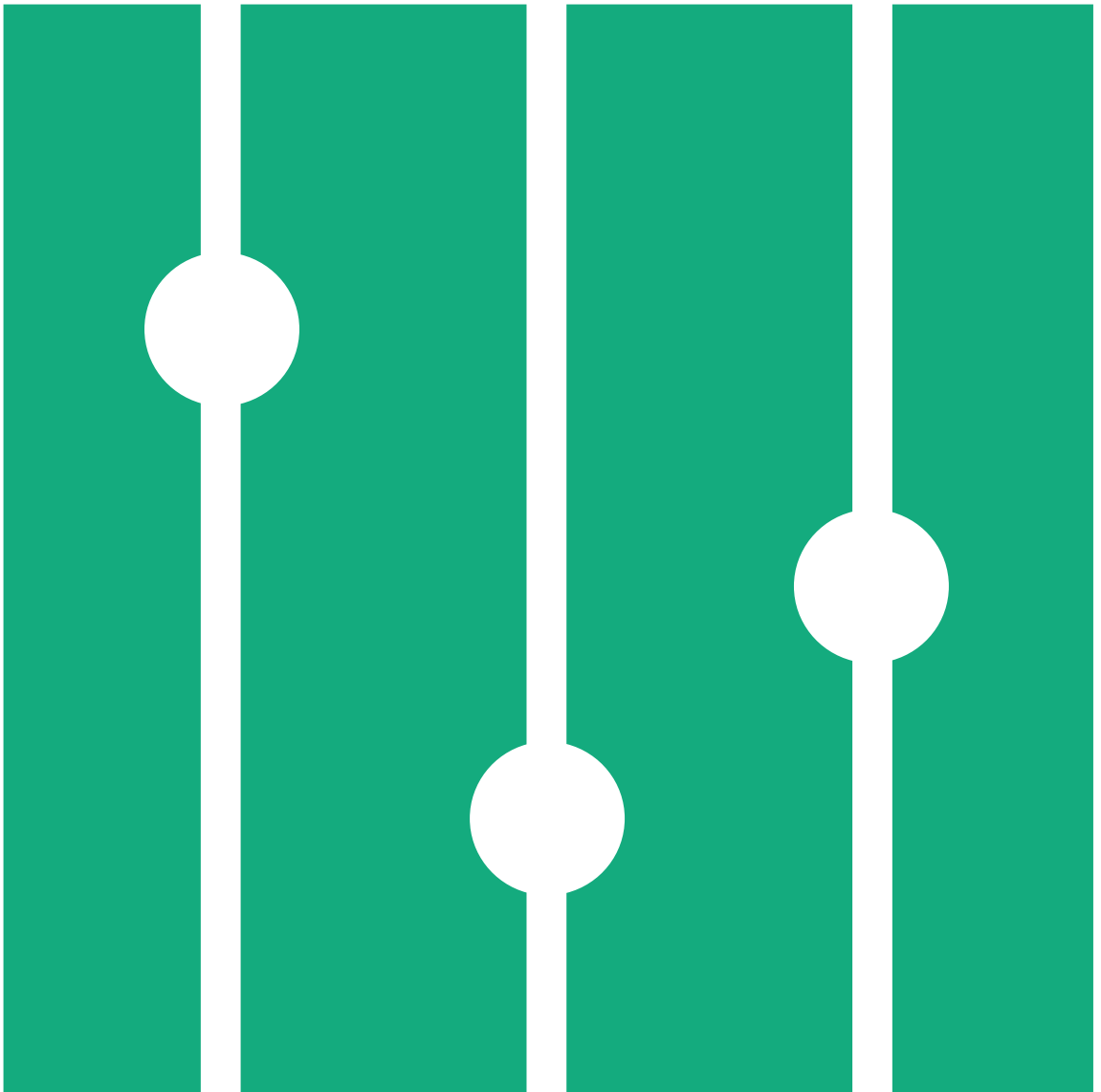


##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바로알기





#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바로알기

김성현 대표 변리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 약력

한양대학교 정보통신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現 위포커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前 (주)클라우드웍스 지식재산권 최고책임자  
前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외부자문위원

지난 7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 있는 혁신 기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스타트업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는 발판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심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14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이번 제도 개선 추진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스타트업 및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또한 혁신 기술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가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까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전문가와 함께 그 해답을 구해봤습니다.

---

## 목차 Table of Contents

---

|           |  |           |
|-----------|--|-----------|
| <b>01</b> | <b>들어가며</b>  | <b>05</b> |
| <b>02</b> | <b>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요</b>                                  | <b>07</b> |
| <b>03</b> | <b>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14개 추진 과제</b>                        | <b>10</b> |
|           | 3-1. 1단계 신청  |           |
|           | 3-2. 2단계 심사  |           |
|           | 3-3. 3단계 사후관리  |           |
| <b>04</b> | <b>스타트업과 투자사 유의사항</b>                                | <b>23</b> |
|           | 4-1. 딥테크 기업이 단수 평가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일까?           |           |
|           | 4-2.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가 기술기반 기업과 사업모델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
|           | 4-3. 새롭게 도입된 표준기술평가모델로 딥테크 기업 평가도 가능할까?              |           |
|           | 4-4. 국책연구기관은 기술신용평가기관 대비해서 기술평가 전문성이 높을까?            |           |
| <b>05</b> | <b>혁신 기술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b>                         | <b>31</b> |
|           | 5-1. 평가 수수료 및 기간 현실화를 통한 기술평가 신뢰성 강화                 |           |
|           | 5-2. 딥테크 전용 유연한 기술평가모델의 도입                           |           |
|           | 5-3. 기술성 심사 면제·차별화 대상 확대를 통한 기술평가 통과기업의 상장예비심사 부담 완화 |           |
| <b>06</b> | <b>나가며</b>   | <b>34</b> |
|           | <b>참고문헌</b>  | <b>35</b> |

---

01.

들어가며

---

## 01 들어가며

---

지난 7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어 8월 1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이 딥테크와 딥사이언스 등 첨단 분야 회수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에서도 첨단-전략기술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상장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만큼 정부가 바이오 경제 2.0의 본격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14개의 세부 과제 포함 많은 변화를 다루고 있고, 상장 특례 제도의 특성상 그 내용이나 정보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개선 내용 포함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관한 스타트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스타트업이나 투자사가 유의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바로 알리고자 한다.

# 02.

##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요



## 02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요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보유 기술의 혁신성 또는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등 최소 재무요건만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허용하는 특례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7월까지 150개의 기업이 본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이들의 시가총액 합산액은 26조3,000억 원에 달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나 2013년 특례대상 업종 제한이 폐지되면서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기술특례대상 업종이 SW, 로봇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3년 간은 비바이오 분야의 상장 기업의 수가 바이오 분야를 상회하고 있다.

[표1] 기술특례상장 기업 수 및 기술 분야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06.16 |
|-------------|------|------|------|------|------|------------|
| 신규 상장 기업 수  | 101  | 108  | 103  | 115  | 129  | 49         |
| 기술특례상장 기업 수 | 21   | 22   | 25   | 31   | 28   | 15         |
| 바이오 기업 수    | 15   | 14   | 17   | 9    | 8    | 4          |
| 비바이오 기업 수   | 6    | 8    | 8    | 22   | 20   |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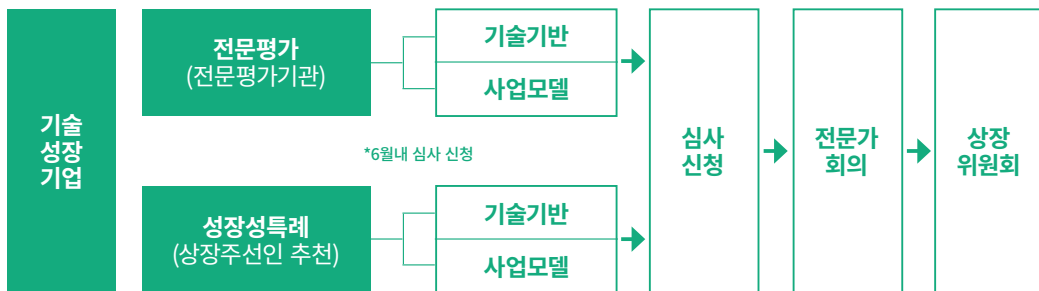
출처: 한국거래소 자료를 재구성

2017년부터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특례와 상장 주관사로부터 성장성 평가를 통한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성장성 특례로 다변화되었다. 전문평가기관은 기술성장기업을 기술기반 기업과 사업모델 기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기술기반 기업의 경우 기술성과 시장성을 중심으로, 사업모델 기업의 경우 사업성과 자원이프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 2개 기관에 의한 평가 등급이 A&BBB 등급 이상이어야 상장예비심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성장성 특례의 경우에도 상장 주관사가 기술성장기업을 기술기반 기업과 사업모델 기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021년 유니콘 특례 제도가 도입되어 시장 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평가를 생략하고,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1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으면 되는 단수 평가가 도입되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도 단수 평가 특례를 적용하였다.

상장예비심사 전에 이루어지는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와는 별도로 한국거래소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력 및 시장성 등에 대해 각 산업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기술평가 등급이 AA&A 등급 이상인 경우 전문가 회의도 생략할 수 있다. 상장위원회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 및 전문가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기업의 상장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규상장을 승인한다.

[그림1] 기술특례상장 트랙별 심사 절차



출처: 한국거래소, 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 (23.5.30)

# 03.

##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14개 추진 과제

3-1 1단계 신청

3-2 2단계 심사

3-3 3단계 사후관리

## 03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14개 추진 과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은 신청-심사-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14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각 단계별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주요내용

| 14개 제도개선   | 1단계 신청   | 2단계 심사   | 3단계 사후관리  |
|--|--|--|---|
| <p><b>문호</b> 확대<br/>7개 과제</p> <p>우수 첨단기술 기업에게는 문호를 확대합니다</p>                 | <p>첨단기술 기업에<br/>단수 평가 허용<br/>(초격차 기술특례)</p> <p>최대 출자자 요건 완화</p> <p>복잡한 기술특례상장<br/>제도 유형 체계화·<br/>합리화</p> <p>거래소 유인구조 개선</p> <p>기술특례상장 제도<br/>홍보 확대</p> | <p>표준기술평가모델<br/>고도화</p> <p>평가기관 참여 유인 제고</p> <p>상장심사 기술전문성<br/>제고</p> <p>상장재도전 기업<br/>신속 심사 지원<br/>(신속심사제도)</p> <p>거래소-금감원 정보<br/>공유</p> | <p>주관사 책임성 제고<br/>장치(뫼백옵션 등)<br/>제도화</p> <p>합리적 공모가 산정을<br/>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p> <p>영업실적 공시 구체화</p> <p>기술특례상장 종목<br/>주가 및 주관사<br/>정보제공 강화</p> |
| <p><b>규율</b> 강화<br/>7개 과제</p> <p>비우수기업은 엄정하게<br/>걸러내고, 투자자보호는<br/>강화합니다.</p> | <p>“우수” “첨단기술” 분야<br/>기업의 제도 접근성 제고</p>  | <p>심사의 전문성+신속성<br/>제고 기반 마련</p>  | <p>시장의 비우수업체 선별<br/>유도 및 투자자 보호 강화</p>  |

출처: 금융위원회,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23.7.27)

### 3-1. 1단계 - 신청 단계

첫 번째로, 1단계인 상장 신청 단계의 주요 과제 목표는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한 기술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첨단기술 기업에 단수 평가 허용(초격차 기술 특례)

이른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하여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단수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기간(평균 3개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 중복대응의 어려움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초격차 기술 특례는 (1)「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등 12개 분야 50개 기술, 과기부 지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 전략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개 분야 17개 기술, 산업부 지정) 기업으로, (2) ①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②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대상기술에 관한 조건과 시장평가에 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최대 출자자 요건 완화

초격차 기술 특례와 마찬가지로,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의 경우, 중견 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최대 출자자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연구)-중견기업(사업화)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모델이 활용 중인 현실을 감안하여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기술특례상장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스케일업 기업(최근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 등 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최대 출자자인 경우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투자 기업의 실질이 중소기업임에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불가하였다.

[표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이 다음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 등의 관계회사 등이 아닐 것**

- 대기업 집단(계열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포함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 소유 & 최대 출자자」
- 관계기업 간 지분비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합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매출액 초과

「중소기업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재구성

제도 개선이 되면, (1)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매출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일 것, (2)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일 것, (3) 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4) 중견기업이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이 50% 미만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술특례상장 유형 2 가지 중 혁신기술 트랙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복잡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유형 체계화·합리화**

다양하고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단순화한다. 향후에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기술특례상장 유형이 단순화되고, 각 트랙별로 그에 맞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기술평가 트랙(기술기반·사업모델)과 성장성 트랙(기술기반·사업모델)으로 세부적으로 4개의 기술특례상장 유형이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운영되어 왔다. 평가 주체는 기술특례상장 유형에 따라 전문평가기관과 상장 주관사가 되고, 중점 평가요소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모델의 성장 가능성으로 대별되었다.

금융위는 기술특례상장 유형에 따라 평가 주체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중점 평가요소가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서 평가 주체의 전문성과 중점 평가요소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이번 제도 유형 단순화는 기술특례상장 유형과 중점 평가요소를 일치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표3]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합리화 내용

| 현행      |                |        | 개선      |         |        |
|---------|----------------|--------|---------|---------|--------|
| 기술특례 유형 | 중점평가요소<br>(택1) | 평가주체   | 기술특례 유형 | 중점평가요소  | 평가주체   |
| 기술평가 트랙 | 기술의 혁신성        | 전문평가기관 | 혁신기술 트랙 | 기술력     | 전문평가기관 |
|         | 사업모델의 성장성      |        |         | (폐지)    |        |
| 성장성 트랙  | 기술의 혁신성        | 상장 주관사 | 사업모델 트랙 | (폐지)    | 상장 주관사 |
|         | 사업모델의 성장성      |        |         | 사업성·성장성 |        |

### 거래소 유인구조 개선

거래소의 경영평가 지표 내에 ‘특례상장(기술특례상장 등) 실적’ 비중을 현행 25% 대비 확대하고, 특례기업 부실화(상장 후 2년 내 관리종목 지정) 관련 감점 요인 등 내부 KPI를 도입한다. 거래소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는 한편, 부실 가능성은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유인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 기술특례상장 제도 홍보 확대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등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여 상장을 보다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6월부터 거래소는 참석대상 기업의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춰 기술특례상장 제도만을 집중설명하는 로드쇼를 개최했다. 향후에는 로드쇼가 분기 별 1회씩 개최하도록 정례화된다. 기술특례상장 관련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FAQ를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업데이트 하는 등 상시 소통채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3-2. 2단계 - 심사 단계

두번째로, 2단계인 심사 단계의 주요 과제 목표는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 전문가회의 기술 자문 → 상장위원회 심사에 이르는 심사단계별 기술 전문성을 높여 심사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표준기술평가모델 고도화

지난 2월 기술평가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기술평가모델이 도입된 바 있다. 표준기술평가모델 도입 초기로 충분한 평가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추후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성과 평가 및 보완을 추진한다. 단, 평가항목 대분류(기술성, 시장성) 중 기술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 등 최근 일부 기관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기술평가팀 구성 시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4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표4] 표준기술평가모델 개요

| 구분            | 내용  |
|---------------|---|
| 평가항목 및 지표 표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개편(중복항목 제거, 개념 명확화 등)</li> <li>-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지표 개발</li> <li>- 공통/선택 평가지표 개발</li> </ul>                |
| 업종별 평가지표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IT 등 주요 업종별 평가지표 개발</li> <li>- AI, 메타버스 등 혁신기술별 모듈형 지표 개발</li> </ul>                                     |
|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해설 및 평가시 유의사항 등을 별도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li> <li>-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결과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고서 양식 제시</li> </ul> |
| 평가 프로세스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신청 → 평가기관 배정 → 평가 수행 → 평가 결과 등 일련의 기술평가 프로세스 개선</li> </ul>   |



### 평가기관 참여 유인 제고

기술 전문성이 높은 과기부·산업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기술평가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평가지표 등에 기술평가 직접 수행 실적(과기부) 및 소속 연구원의 타 평가기관 평가단 참여 실적(산업부)과 같은 ‘기술평가 참여 실적’을 추가한다.

다양한 분야 연구기관을 전문평가기관 풀에 지속 편입하여 기술평가에 참여하는 전문평가기관의 외연을 확대한다. 최근 거래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풀을 확대하였다.

전문평가기관의 다른 축인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의 경우 기술 전문성을 갖춘 내부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술평가팀 구성시 외부위원의 참여가 많았다. 제도 개선안은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National Researcher Information)의 전문가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여, 기술평가팀 구성시 전문가 확보 여력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표5] 전문평가기관 목록

| 기술신용평가기관(7사)   |
|--|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br>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한국기술신용평가  |
| 국책연구기관(18사)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br>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br>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br>금융보안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상장심사 기술전문성 제고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상장심사 참여를 늘린다. 거래소의 상장위원회의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전문가회의의 기술 전문가 풀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하여 확대하는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거래소는 전문가회의의 기술 자문을 진행한 후 상장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상장위원회는 당연직 5인(코스닥 시장위원회 위원 4인, 코스닥 상장 담당 본부장보 1인)과 전문가 4인(기술전문가 1인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거래소가 보유한 전문가 풀 40인 중 기술전문가는 13인으로 그 비중이 적은 편이며, 대부분 바이오나 컴퓨터 공학 등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바이오 6인, 컴퓨터공학 4인, 반도체 1인, AI·로봇 1인, 변리사 1인).

이에 전문가 섭외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의 전문가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상장위원회 전문가 풀 내의 기술전문가의 숫자를 전체 50인 중 20인 이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사한 기술 분야 기업을 그룹화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 상장제도전 기업 신속 심사 지원(신속심사제도)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하여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기간도 단축한다.

제도 개선에 따라 거래소는 평가요소별 판정 결과와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비단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요소는 물론 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요소에 대한 심사의견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술성·사업성 외 평가요소의 부적합으로 탈락한 기업이 일정기간 내에 재심사 신청시 기술평가를 단수평가로 완화할 뿐만 아니라 신청 순서에 따르지 않고 우선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도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 거래소-금감원 정보공유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한 양 기관의 사전 정보 공유 절차가 마련된다.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시 중복되는 심사요소가 존재한다. 거래소의 질적심사 항목 중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전성, 기타 투자자 보호사항 등 일부 항목은 증권신고서 심사 시 주요 정정 발생 항목인 투자위험 요소와 유사하다.

제도 개선안은 금감원-거래소가 심사 중 취득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정보 공유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중 검토한 주요 이슈를 포함한 위험평가보고서, 기술성·사업성 분석 내용을 금감원에 공유하고, 금감원은 정정 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래소에 공유한다. 양 기관은 정보공유 상황 평가 및 정보공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를 매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 3-3. 3단계 - 사후 관리 단계

세번째로, 3단계인 사후 관리 단계의 주요 과제 목표는 우수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은 제고하되, 부실기업은 엄정하게 걸러낼 수 있도록 주관사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관사의 책임감 있는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두터운 투자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 주관사 책임성 제고 장치(풋백옵션 등) 제도화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에는 6개월의 풋백옵션(put back option, 투자자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부과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주관사 책임을 강화한다.

최근 3년 이내 주선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관리 종목 지정, 투자환기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될 경우, 해당 기업을 상장한 주관사가 추후 혁신기술 트랙으로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 부과 및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 연장의 추가조건이 부과된다.

###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현재 공모가는 주관사·상장기업의 공모 희망가 밴드 결정 및 증권신고서 제출과 함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사전수요조사가 금지된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IPO의 가격발견기능에 한계가 존재한다.

제도 개선안에서는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한 사전수요조사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영업실적 공시 구체화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 추진 당시의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값의 비교 차이 분석에 대한 기재 방식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한다.

최근 5년간 기술특례상장기업 대상 영업실적 추정치·실제값 공시현황을 점검하고 누락·부실 기재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상 영업실적 추정치·실제값 기재 방식을 구체화 및 표준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투자자 이해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 기술특례상장 종목 주가 및 주관사 정보제공 강화

주관사 별 기술특례상장건수, 수익률 등의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KIND)를 통해 시장에 비교 공시함으로써, 주관사의 우수기업 발굴 역량을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를 개편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의 주가 정보만 제공되던 것이 상장일로부터 5년으로 확대되고, 기술특례상장 종목을 상장트랙과 주관사별로 비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되며, 주관사 별 기술특례상장 건수, 수익률 및 상폐 등 현황과 주가등락률 상하위 10개 종목 주관사 등 관련 정보가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 04.

## 스타트업과 투자사 유의사항

- 4-1 딥테크 기업이 단순 평가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일까?
- 4-2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가 기술기반 기업과 사업모델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4-3 새롭게 도입된 표준기술평가모델로 딥테크 기업 평가도 가능할까?
- 4-4 국책연구기관은 기술신용평가기관 대비해서 기술평가 전문성이 높을까?

## 04 스타트업과 투자사 유의사항

---

### 4-1. 딥테크 기업이 단수 평가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일까?

초격차 기술 특례는 딥테크 기업에 1회의 단수 평가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다. 업종 기준으로는 2019년도부터 소부장 업종에 단수 평가를 허용한 바 있으나 이후로는 동일한 사례가 없었다.

금융위는 복수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중복 대응이 혁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등급 기준은 상승한 것이다. 평균으로 따져 보면 단수 평가의 A 등급은 복수 평가의 A&BBB 등급보다 그 커트라인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고로움은 덜었지만 난이도는 상승한 것이다. 평가 기회도 한 번뿐이다.

그래서 그럴까. 단수 평가의 선행 사례에 해당하는 소부장 기업들은 단수 평가가 아닌 복수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올해 소부장 특례를 활용하여 상장한 기업 중 스마트레이더시스템, 파두, 시지트로닉스, 마이크로투나노, 라온텍, 자람테크놀로지 등 많은 기업들이 복수 평가를 통해 기술평가를 통과했다.

복수 평가를 선택한 이들 기업들은 평가 비용 절감과 평가 절차 신속화라는 단수 평가의 이점을 왜 활용하지 않은 것일까. 그것은 기업의 희망에 따라 2개 기관에서 복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평가 기회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설명한 소부장 특례는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가 지정한 ‘소재부품전문기업’이 그 대상이다.

소부장 특례와 마찬가지로 초격차 기술 특례도 모든 딥테크·딥사이언스 기업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기준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초격차 기술 특례의 대상 기술이다. 다음은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6] 국가전략기술 50개 기술, 과기부 지정

|           |                        |                       |                  |
|-----------|------------------------|-----------------------|------------------|
| 반도체·디스플레이 | 1.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 2.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 3. 전력반도체         |
|           | 4. 반도체 첨단패키징           | 5. 차세대 고성능 센서         | 6. 프리폼 디스플레이     |
|           | 7.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 8.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                  |
| 이차전지      | 9.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 10.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 11.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
|           | 12.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                       |                  |
| 첨단 모빌리티   | 13. 자율주행시스템            | 14. 전기·수소차            | 15. 도심항공교통(UAM)  |
| 차세대 원자력   | 16. 소형모듈형원자로(SMR)      | 17. 선진원자력시스템·폐기물관리    |                  |
| 첨단바이오     | 18. 합성생물학              | 19. 감염병 백신·치료         | 20. 유전자·세포 치료    |
|           | 21.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                       |                  |
| 우주항공·해양   | 22. 대형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 23. 우주관측·센싱           | 24. 달착륙·표면탐사     |
|           | 25. 첨단 항공가스터빈엔진·부품     | 26. 해양자원탐사            |                  |
| 수소        | 27. 수전해 수소생산           | 28. 수소저장·운송           | 29.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
| 사이버보안     | 30. 데이터·AI 보안          | 31.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 32.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
|           | 33. 신산업·가상융합 보안        |                       |                  |
| 인공지능      | 34.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고도화 | 35. 첨단 AI모델링·의사결정     | 36. 안전·신뢰 AI     |
|           | 37. 산업활용·혁신 AI         |                       |                  |
| 차세대 통신    | 38. 5G 고도화             | 39. 6G                | 40. 오픈랜          |
|           | 41. 고효율 5G·6G 통신부품     | 42. 5G·6G 위성통신        |                  |
| 첨단로봇·제조   | 43.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 44. 로봇 자율이동           | 45. 고난도 자율조작     |
|           | 46. 인간·로봇 상호작용         | 47. 가상제조              |                  |
| 양자        | 48. 양자컴퓨팅              | 49. 양자통신              | 50. 양자센싱         |



[표7] 국가첨단전략기술 17개 기술, 산업부 지정

| 순번 | 분야            | 기술명   |
|----|---------------|---|
| 1  | 반도체<br>(8개)   |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 2  |               |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pi$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
| 3  |               |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
| 4  |               |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
| 5  |               | 픽셀 0.8 $\mu$ m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
| 6  |               |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 기술  |
| 7  |               | 14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 8  |               |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에 해당되는 FO-WLP, FO-PLP, FO-PoP, SiP 등 공정·조립·검사기술   |
| 9  | 디스플레이<br>(4개) |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3,000ppi 이상의 초소형, 500ppi 이상의 중소형, FHD 이상의 중대형, 4K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 (모듈 공정 기술은 제외)  |
| 10 |               | 반치폭 40nm 이하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색재현율 REC2020기준 90% 이상, LCD와 모듈기술은 제외)  |
| 11 |               | 크기 30 $\mu$ m 이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초대형 칩크기 30 $\mu$ m 이하, 모바일 칩크기 20 $\mu$ m 이하, 초소형 칩크기 5 $\mu$ m 이하)                               |
| 12 |               | 크기 1 $\mu$ m 이하의 나노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모듈기술은 제외)  |
| 13 | 이차전지<br>(3개)  |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에너지밀도가 280Wh/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252Wh/kg 이상인 각형 배터리, 28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배터리, 26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 |
| 14 |               | 리튬이차전지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니켈함량 80% 초과)  |
| 15 |               |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실리콘그래파이트 복합음극, 황 양극, 리튬금속 음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리튬금속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
| 16 | 바이오<br>(2개)   |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다회용 바이옱터 세포배양: 1만리터 이상)  |
| 17 |               |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 (자가 및 동종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배양 규모: 100 dose/lot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목적 세포 구성률: 80%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생존율: 80% 이상)        |

이상의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초격차 기술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장평가 요건이 존재한다.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일 것, 그리고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초격차 기술 특례의 경우 A 등급 하나의 기술평가만으로 상장 신청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같은 시장평가 요건이 기존의 BBB등급 이상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총 1,000억원 이상이면 이익미실현 특례(테슬라 요건)로 상장이 가능하다. 딥테크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와 이익미실현 특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이익미실현 특례의 경우 기술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난 4년 간 이익미실현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카페24, 제테마, 리메드, 켈코아에어로스페이스, 씨엔투스성진,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지스, 바이오다인, 제주맥주 등이 있다. 기술평가 특례와 이익미실현 특례 간 한국거래소의 질적 심사 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딥테크 기업은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투자유치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과 관련한 투자자 조건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른 벤처투자기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액셀러레이터, 기술지주회사 등)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유형에 대해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 4-2.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가 기술기반 기업과 사업모델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현행 기술특례상장 유형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특례와 상장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성장성 특례로 대별된다.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합리화는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특례에 각각 존재하던 기술기반 트랙과 사업모델 트랙을 단순화한 것이다. 단순화 방식은 이렇다. 기술기반 기업만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모델 기업은 상장 주관사를 통해서만 성장성을 평가받도록 하였다.

제도 개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특례상장 유형의 연혁을 살펴야 한다. 기술평가 특례 중 기술기반 트랙이 가장 기본적인 트랙이다. 2017년부터 사업모델 트랙과 성장성 특례가 도입되었다. 사업모델 트랙은 지식 기반의 경쟁력 있는 독자적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성장성 특례는 상장 주관사

가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상장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제도 도입시에는 상장트랙 다변화를 목표로 하였다. 기술기반 기업의 경우 기술성과 시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모델 기업의 경우 사업성과 자원인프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세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8] 전문평가의 평가항목(기술기반기업)

| 대항목 | 중항목            | 소항목             |
|-----|----------------|-----------------|
| 기술성 | 기술의 완성도        | 기술의 진행 정도       |
|     |                | 기술의 신뢰성         |
|     |                | 기술의 자립도         |
|     | 기술의 경쟁우위도      | 기술의 차별성         |
|     |                | 기술의 모방난이도       |
|     |                | 기술의 확장성         |
|     | 기술개발 환경 및 인프라  | 연구개발 활성화 수준     |
|     |                | 경영진의 전문성        |
|     |                | 기술인력 등 관리체계     |
|     |                |                 |
| 시장성 | 목표시장의 잠재력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
|     |                | 목표시장의 특성        |
|     |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기준 | 사업모델 수립 수준      |
|     |                | 자본조달능력          |
|     |                | 생산 및 품질관리 역량    |
|     |                | 판매자 확보 수준       |
|     |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
|     |                | 제품/서비스의 시장 점유수준 |
|     |                | 제품/서비스의 확장 가능성  |

출처: 한국거래소, 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 (23.5.30)

[표9] 전문평가의 평가항목(사업모델기업)

| 대항목       | 중항목         | 소항목             |
|-----------|-------------|-----------------|
| 기술성       | 시장매력도       |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
|           |             | 목표 시장의 특성       |
|           | 사업모델의 타당성   | 사업모델 수립 수준      |
|           | 사업모델의 경쟁우위도 | 경쟁사 수립 수준       |
|           | 사업경쟁력       | 사업의 시장 지위       |
|           |             | 서비스 제공 역량       |
|           |             | 자본조달능력          |
| 판매처 확보 수준 |             |                 |
| 시장성       | 경영역량        | 경영진의 전문성        |
|           | 개발역량        | 인력 수준 및 전문성     |
|           |             | 연구개발 투자현황       |
|           |             | 기술 자립도          |

출처: 한국거래소, 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 (23.5.30)

성장성 특례의 경우 전문평가기관이 아닌 상장 주관사가 기업의 성장성을 직접 평가한다. 이때에도 앞선 기술평가와 동일하게 기업은 기술기반 기업과 사업모델 기업으로 구별한다. 상장 주관사는 성장성 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평가 항목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항목과 대동소이하다.

[표10] 기술특례상장 유형별 이용 현황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기술특례상장 기업수 | 21   | 22   | 25   | 31   | 28   |
| 기술기반       | 20   | 16   | 18   | 23   | 26   |
| 사업모델       | -    | 2    | -    | 3    | 1    |
| 성장성특례      | 1    | 4    | 7    | 5    | 1    |

출처: 한국거래소자료를 재구성

기술평가 특례로 상장한 사업모델 기업으로는 플리토, 캐리소프트, 엔비티, 와이드플래닛, 라이프시멘틱스 등이 있다.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기술기반 기업으로는 셀리버리(신약개발), 라파스(의료기기), 제놀루션(체외진단), 셀레믹스(유전자분석), 이오플로우(헬스케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바이오 CDMO), 진시스템(분자진단), 선바이오(바이오시밀러) 등 대부분이 바이오 기업이다. 사업모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원티드랩(구직 플랫폼)이 있다.

증권사는 기술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이 기술평가 우회 통로로 성장성 추천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술특례상장 제도 단순화의 명분으로 뽑혔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 결과를 성장성 보고서에 첨부해 왔다. 일례로 레인보우로보틱스(로봇)의 경우 나이스디앤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곳으로부터 기술평가를 진행하였다.

제도 개선에 의하면, 기술특례상장 유형은 전문평가기관이 기술력을 평가하는 혁신기술 트랙과 증권사가 사업성·성장성을 평가하는 사업모델 트랙으로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기술기반 기업은 필수적으로 혁신기술 트랙을 선택해야 하고, 사업모델 기업은 필수적으로 사업모델 트랙을 선택해야 한다.

성장성 특례를 이용했던 다수의 바이오 기업과 라닉스(시스템반도체), 알체라(AI), 레인보우로보틱스(로봇), 삼영에스앤씨(전자부품 센서) 등 일부 비바이오 기업과 같은 기술기반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본 특례를 활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모델 기업은 기술평가가 아니라 (6개월 풋백옵션에 따른) 상장사의 추천에 의존해야 한다. 최근까지 버드뷰(모바일 뷰티 플랫폼), 식신(푸드테크), 자비스앤빌런즈(세무회계 플랫폼), 쓰리디메디비전(메디컬 에듀테크) 등이 사업모델 기업으로 기술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이와 유사하게 사업모델의 혁신을 통해서 상장을 준비하고자 했던 기업들은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합리화는 문호 확대 7개 과제 중 하나인데 반해서 혁신기업들의 선택지는 줄어든 셈이다.

### 4-3. 새롭게 도입된 표준기술평가모델로 딥테크 기업 평가도 가능할까?

표준기술평가모델에 관한 개선 내용은 전반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표준기술평가모델이 올해 2월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만큼 추후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성과 평가 및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표준기술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기술평가 이루어진 곳은 6곳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딥테크 기업과 관련한 표준기술평가모델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듈형으로 산업 평가지표와 기술 평가지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소부장 및 SW를 포함하여 비바이오 산업 분야의 기술특례상장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IT, 제조(소부장), 서비스·기타 산업 분야(이상 5개)만을 다루는 데 그치고, 기술분야 또한 AI/빅데이터, 실감형 콘텐츠(메타버스), 이차전지/ESS, 청정에너지 등의 제한적인 분야(이상 4개)를 다루는 데 그쳤다. 시스템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우주항공,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딥테크 분야를 고루 반영하지 못했다.

[표11] 모듈형 산업 평가지표 및 기술 평가지표

| 산업 평가지표(택1 필수) | 기술 평가지표(선택 활용) |
|----------------|----------------|
| 바이오 의약품        | AI/빅데이터        |
| 바이오 의료기기       | 실감형 콘텐츠(메타버스)  |
| IT             | 이차전지/ESS       |
| 제조(소부장)        | 청정에너지          |
| 서비스·기타         | -              |

출처: 한국거래소자료를 재구성

일례로 AI 기술에 대한 주요 평가지표들도 알고리즘 경쟁력, 데이터 저장·처리·분석 기술 등에 머물러 있고 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scale Language Model)과 멀티모달(Multi-modal) AI 등 급변하는 AI 시장과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격차 기술특례의 대상이 되는 50개 국가전략기술과 17개 국가 첨단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수소, 차세대 통신, 양자 등 다양한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기술평가모델은 그와 같은 기술들에 관한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딥테크 기업의 상당수는 일관 되고 표준화된 기술평가는 받을지 언정 업종이나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 4-4. **국책연구기관은 기술신용평가기관 대비해서 기술평가 전문성이 높을까?**

현재 거래소에서 지정한 기술평가 전문평가기관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7곳과 국책연구기관 17곳이다. 숫자로는 국책연구기관이 더 많지만 참여 실적은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더 우세하다. 최근 5년 간 기술평가 537건 중 국책연구기관의 참여는 104건으로 19.4%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8개 기관은 기술평가 실적이 0건이다.

기술평가 실적은 결국 기술평가 경험을 대변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높을지언정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크지 않다. 제도 초기부터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평가에 참여해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들의 평가 참여 건수는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반면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최근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로 지정된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100건 내외의 기술평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석박사, 변리사, 기술신용평가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웹사이트에 공개된 기술평가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박사급 인력 257명, 기술평가사 899명, 외부자문위원 Pool 947명(20년6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기술평가 참여 유인 제고 및 특정 전문평가기관으로의 쏠림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의 참여율은 향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들이 대거 참여한다면 혁신 기술에 대한 전문성으로 평가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반면,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책연구기관이라면 과도기 동안에는 기술신용평가기관과 같이 외부자문위원을 십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전문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05.

## 혁신 기술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5-1 평가 수수료 및 기간 현실화를 통한 기술평가 신뢰성 강화

5-2 딥테크 전용 유연한 기술평가모델의 도입

5-3 기술성 심사 면제·차별화 대상 확대를 통한 기술평가 통과기업의 상장예비심사 부담 완화



## 05 혁신 기술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 5-1. 평가 수수료 및 기간 현실화를 통한 기술평가 신뢰성 강화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에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수수료는 1,500만원이다. 그리고 기술평가에는 통상 6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평가팀은 박사학위 소지자 및 변리사 등을 포함하여 4~6인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평가 수수료와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팀 개 개인이 기술 평가에 온전히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 같은 영향은 외부자 문위원들에게서 더욱 크며, 고급 인력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 어렵다. 표준기술평가모델의 도입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인력의 부담은 더욱 늘었다. 또한 바이오에 집중되었던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산업·기술 분야가 비바이오로 다양해지면서 다방면의 기술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평가 수수료 및 기간은 제자리 걸음이다. 1,500만원의 평가 비용(복수 평가의 경우 3,000만원)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정감사 비용에 비하면 큰 부담은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상장 전 벤처캐피탈 등에 의한 실사보다 그 검증 수준이 못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거래소는 과거 2015년에 상장비용부담 완화라는 명목으로 평가 수수료를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하고, 평가 기간을 9주에서 4주 이내로 단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평가 수수료 및 기간 현실화가 기술평가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

## 5-2. 딥테크 전용 유연한 기술평가모델의 도입

딥테크는 심도 깊은 과학적 발견과 연구를 기반으로 산업과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과학 및 공학 기반 미래 첨단 기술을 말한다. 딥사이언스는 딥테크의 기초 연구 버전에 해당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 기술기업의 상장을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해당 기업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가 부족하다. 딥테크와 딥사이언스 기술 등 평가대상기술이 다양화되고 고난도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관련 평가지표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작금의 기술의 변화는 산업 혁명보다 10배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하다고 한다. 지금과 같이 기술의 변화 속도와 깊이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비선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경직된 기술평가모델의 한계는 명확하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술의 융복합이 확대되면서 특정 기술을 특정 평가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유연한 기술평가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소한의 필수적인 평가지표에 한하여만 규정하고, 나머지 평가지표는 평가팀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기술평가의 객관성은 복수평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5-3. 기술성 심사 면제·차별화 대상 확대를 통한 상장예비심사 부담 완화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경우 최소한의 재무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에 비하면 재무요건이 사실상 면제된다.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와는 별도로 거래소는 기업의 기술력 및 시장성 등에 대해 각 산업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한편 기술평가 등급이 AA&A 등급 이상일 경우 전문가 회의의 생략이 가능하다. 상장예비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적 요건은 기업의 계속성이다. 중점 심사사항으로는 영업상황, 기술성·사업성,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 등이 존재한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높은 4차 산업의 경우 업종별 질적심사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혁신성, 기술성, 성장성을 위주로 심사한다. 전문가 회의와 마찬가지로 기술평가 등급이 AA&A 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사업성 심사를 면제한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기술평가 등급 또는 산업 분야를 고려하여 심사를 면제하거나 심사항목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여 중복 기술평가·심사에 따른 우수 기술 기업의 상장예비심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06.

나가며

## 06 나가며

---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존재 의의는 기술력 있는 혁신 기술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우선심사하고, 상장 요건을 일부 완화하며,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수한 기술을 갖춘 기업이 상장을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혁신 기술 기업의 상장 활성화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고, 벤처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실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선별 기능과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첨단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의 상장을 돕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넘어선 보다 과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술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폭 넓은 상장 요건 완화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활성화와 혁신 기술기업의 조기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 정책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3),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금융위원회(2023.7.27),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 발간물

리처드 돕스 외(2016), 「미래의 속도」, 청림출판

한국거래소(2023), 2023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

### 기사

이데일리(2023.7.28), 바이오협회,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환영...”우수 기술 기업에 기회 확대”

서울경제(2023.8.1), 벤처 스타트업 업계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환영’



## STARTUP ALLIANCE

- 발행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기획/제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발행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5,  
11층(논현동, KTS 빌딩)  
<https://startupall.kr>
- 발행일** 2023.10.27

ISSN 2982-4834

이 책의 저작권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있으며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5,  
11층 (논현동, KTS 빌딩)

<https://startupall.kr>

발행일: 2023.10.27

ISSN 2982-4834